

불용품처리규정(3-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불용품에 대한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하여 본 대학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사용가치가 없는 유휴 물품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2. 각종 시설물 등에서 철거된 자재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수리는 할 수 있으나, 수리비가 구입금액의 1/3을 초과하는 물품
4. 시효가 지난 폐기 서류, 도서 및 신문지 등의 지류 일체
5. 집기 비품 및 기계 기구 등 폐품 및 잡품으로써 경제적 쓸모가 없는 물품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처리절차) ① 불용품의 처분은 자산운영팀에서 처리한다.(개정 2018.07.16).

② 각 부서에서 불용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별지 1)에 따라 기재하고 자산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처리와 매각 결정을 위한 상태 분류는 관능검사 또는 이 화학 검사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자산운영팀에서 결정한다.

제5조(승인권한) 물품의 처분은 총무처장 및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처분방법) 처분방법은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무처장에게,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총장에게,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18. 12. 6)

제7조(처분대금) 불용품의 처분한 대금은 학교 세입으로 경리팀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리된 물품은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

과 같다.

제4조제1항 중 “관재팀”을 “자산운영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불 용 결 정 조 서

불용신청일	년	월	일
불용결정일	년	월	일

물품관리 번호	품 명	규 격	물품의 상 태	단위	수량	장부상가격		취 득 년월일	내용 년수
						단가	금액		
물품 사용 경 위									
불용 결정 사 유									
대체 사용 여 부									
처분 방법									
기 타									
결 재	계	파트장	팀 장	처 장	총 장	지 시 사 항			